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안내



법 률 : 제11970호
공포일자 : 2013. 7. 30
담당부서 : 전력산업과(02-2110-5476)
전문참고 :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이 규정된 조문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

▣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용안내



대통령령 : 제24677호
공포일자 : 2013. 7. 30
담당부서 : 가스산업과(02-2110-5466)
전문참고 :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는 전년도 천연가스 자가소비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액화한 것을 기준으로 10만 킬로리터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년도 천연가스 자가소비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그 저장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의 하나인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 또는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및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내용안내



대통령령 : 제24684호

공포일자 : 2013. 8. 6

담당부서 : 산재예방정책과(02-6922-0915)

전문참고 : 고용노동부(www.moel.go.kr)

㉠ 개정이유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을 추가하고, 사업장에서 노사 간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추가(안 제9조제1항, 안 별표 1의2 신설)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에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추가함으로써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보호를 강화함

나.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추가(안 별표 3)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에 지금까지 적용이 제외되어 왔던 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조업 등을 추가함으로써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함

다.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추가(안 별표 5)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에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건설업 또는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이상인 건설업을 추가함으로써 건설근로자에 대하여도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의 추가(안 제25조, 안 별표 6의2 신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사업에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금융 및 보험업, 정보서비스업 등을 추가함으로써 노사 간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함

마.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안 제47조의3 신설)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



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관련 공무원 등이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 관련 자료의 처리 등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5 제40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내용안내



부 령 : 제352호
공포일자 : 2013. 6. 19
담당부서 : 계약제도과(044-215-5228)
전문참고 : 기획재정부(www.mosf.go.k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의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당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이 경미하거나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같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할 때 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 시 고려 요소로 청렴계약 준수도를 추가하고,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하자 보수보증금 납부의무를 예외적으로 면제하는 대상에서 철도·궤도공사를 제외하는 한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같음하는 과징금 부과 세부적인 대상·기준을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와 입찰참가 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정하고, 국가계약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직·운영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내용안내



부 령 : 제20호

공포일자 : 2013. 7. 15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9, 3370)

전문참고 : 국토교통부(www.molit.go.kr)

㉠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세대 내 바닥구조 기준을 강화하고,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며, 개별 공동주택의 다양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 시설 설치 총량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24529호, 2013. 5. 6. 공포, 2014. 5. 7. 시행 및 대통령령 제24621호, 2013. 6. 17. 공포, 12. 18.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 제외 부분 구체화(안 제3조의2 신설)

- 1)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세대 내 층간 바닥두께 기준과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하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개정됨.
- 2)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발코니, 현관, 벽으로 구획된 창고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승강기 설치기준 강화(안 제4조)

종전에는 계단실형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 이상, 복도형 공동주택에는 100세대를 넘는 10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인 계단실형 공동주택에는 2대 이상, 복도형 공동주택에는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함

다. 주택단지 안의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등 설치기준 정비(안 제6조)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은 승합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면적 이상의 공간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차도·보도 및 차도와 보도의 경계 등 도로 설치기준과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함

㉢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6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력기술관리법령 유권해석(산업통상자원부) 사례

1 자체감리수행중 잔여일수 외부감리 가능여부

공공기관이 자체감리하는 경우로서 전기감리원 의무 배치일수가 고급감리원기준으로 100일 이상입니다.

- 현재 직원의 인사발령으로 감리배치를 80일 하였던 데 적정등급을 찾을 수 없을 경우, 나머지 배치일수 20일을 외부 감리업체에 위탁하여 감리수행할 수 있는지

2 감리용역실적신고시 첨부서류(계산서)에 대하여

- PQ기준 별지제2호서식 현황신고서의 항목별 첨부 서류 중 4항의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첨부에 관한 사항으로,
 - 공동계약에 의한 공동수급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 대표자의 단일계좌로 전액 용역대가를 발주처에서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하는 경우로서 별도의 약정서에 의한 공동수급원이 공동수급대표자를 상대로 용역대가를 청구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시 공급 받는 자가 발주처가 아닌 공동대표자가 되는 경우
 - 공동수급 분담자(전기부분)를 용역실적신고시 협회 측에서는 발주처에 공급하는 계산서만을 인정하고 있어 용역실적신고가 불가능한 실정임.
 - 공사감리원료신고는 계산서와 관계없이 인정되지만 용역수행실적은 불인정되어 서로 상충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수급 분담이행방식과도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며, 발주처가 아닌 공동수급대표자로 공급하는 계산서 등도 용역실적신고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 1에 대하여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에서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공사감리는 감리업자에게 발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로서 소속 감리원에게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경우(자체감리)에는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공공기관이 자체감리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전력시설물 공사의 품질확보 및 공사감리의 연속성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해당 공사 종료까지 자체감리로 수행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됨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민원을 해결하여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10. 6. 28)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4항 및 지식경제부고시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 제1항에 따라 감리업자가 유사용역수행실적을 확인받고자 제출하는 세금계산서는 해당 용역비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 이므로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인 경우라도 발주자가 발행한 계산서를 첨부해야 실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국가계약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한 “공동계약 운용요령(예규 제2200.04-136-19호, 2009.9.21)”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선금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라 하더라도 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직접 발주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통하여 감리대가를 지급 받는 것은 동 요령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법을 운영하는 것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이행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다소 불편이 따를 수 있겠으나,
 - 발주자(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가 아닌 공사업자 또는 건축사사무소 등이 발행하는 계산서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불법 또는 위법감리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세금계산서 첨부가 업체의 실적신고에 불편·개선사항이 있다면 향후, 의견수렴을 통해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10. 12. 2)

전기사업법 유권해석(산업통상자원부) 사례

같은 사업장내 설치된 전기사업용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방법

- 동일회사 소유로 자가용수용설비와 사업용발전설비가 동일구내(설치된 위치 지번은 다름)일 경우, 한전 배전선로와 접속점이 다름에도 하나의 설비로 보고 자가용수용설비 900kW와 사업용발전설비 1500kW를 합산하여 2400kW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 2개의 설비로 본다면 개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사업용 발전설비는 소유자 소속기술자로 선임하고, 자가용수용설비(900kW)는 대행회사에 위탁선임이 가능한지

-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서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를 두고 있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전기설비”라 함은 법 제2조제1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설비로서,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일반용전기설비, 자가용전기설비를 말합니다.
- 같은사업장내 전기사업용설비와 전기수용설비(비상발전설비 포함)가 설치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의 소속은 동일하여야 할 것입니다.
 - ① 전기사업용설비와 전기수용설비로 구분하여 각각 분야별 안전관리자 선임
 - ② 전기사업용설비와 전기수용설비를 통합하여 각각 분야별 안전관리자 선임
- 귀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1500kW)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기사업자 소속기술인력을 상기 ① 또는 ②의 방법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설비 설치장소 사업장에 상시근무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11. 11. 7)

군사용시설에 국군병원이 포함되는지 문의

- 국군병원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2조에 의거 군사시설로 규정되는지 문의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42조(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 군사용전기시설에 속하는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은 전기기능사 2급이상 자격 소지자 또는 군 교육기관 소정인수자로 되어 있는데, 군 시설이라도 위탁업체 근무자의 전기기능사2급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문의

- 전기사업법 제73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 완화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전기사업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용시설)은 통행 또는 사용에 제한을 받는 곳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2호 “군사시설” 및 제6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국군병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용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별표12]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 선임하여야 합니다.
 - 선임 방법은 소속직원 선임하거나 전기안전관리자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상주) 선임 가능

(인터넷 민원질의 2012. 4. 18)